'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

목 차

①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시행	p.1
②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	p.2
③ 먹거리·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	р.3
④ 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	p.4
⑤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	p.5
⑥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% 인하 적용기간 연장	p.6
⑦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	p.7
⑧ 휘발유,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	p.8
⑨ RCEP 등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집행기준 마련	p.9
⑩ RCEP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서식 개정	p.10
111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 품목 수 제한 폐지	p.11
②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	p.12
⑪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	p.13
⑪ 국민안전과 밀접한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재지정	p.14

□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시행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u>< 신 설 ></u>	□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-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운영인이 운영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 가능토록 허용 • (대상물품) 국산품 *타법령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 및 환급대상 내국물품 제외 • (판매한도) 없음 • (판매대상) 해외 거주 외국인
	*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외국인 • (배송지) 외국

- ○【기대효과】면세점의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한 국산품(K-Brand) 수출 증대
- ○【시행일】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업체별로 6월부터 사업 시행
 - * 「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운영 지침」 제정

②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u>< 신 설 ></u>	□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
	• (등록의무 대상요건)
	① '통신판매업자*'로 신고한 자 중
	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을 업으로
	하는 자로서,
	*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
	②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
	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
	※ 다만,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총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

- ○【기대효과】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
- ○【시행일】'21. 7. 1. ('22. 6. 30. 등록의무 유예기간 종료)
 - * 「관세법」 개정

③ 먹거리 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할당관세 대상품목	□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
ㅇ <신 설>	ㅇ 돼지고기, 밀, 밀가루, 대두유, 해바
	라기씨유, 페로크로뮴, 망간, 인산
	이암모늄, 전해액 첨가제
□ 할당관세율	□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
ㅇ 나프타 제조용 원유 (0.5%)	○ 나프타 제조용 원유 (0.5→0%)
□ 조정관세 대상 품목	□ 조정관세 대상품목 종료
ㅇ 나프타 (0.5%)	O <삭 제> (기본세율 0% 적용)
□ 할당관세 적용기간	□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
ㅇ 계란 가공품, 요소('22년 6월 30일)	○ 계란 가공품, 요소('22년 12월 31일)
□ 할당관세 한계수량	□ 할당관세 한계수량 확대
○ 사료용 근채류(70만톤) 	○ 사료용 근채류(100만톤)

- ○【기대효과】할당관세(0% 등 저세율) 적용품목 신규 지정 및 적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관세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여
- ○【시행일】'22. 6. 22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 「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

④ 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커피, 코코아두 등*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* HS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(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) 및 커피의 껍데기 ·껍질과 웨이스트(waste) HS 제1801호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)	
HS 제1802호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 질,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(waste)	

- ○【기대효과】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민 기호식품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
- ○【시행일】'22. 6. 28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개정

5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	□ 면제범위 확대
ㅇ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	○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
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	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
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	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
면세에서 제외 → 과세하고 있음	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
	하는 분까지 면세

- ○【기대효과】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포장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물가안정 지원
- ○【시행일】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개정

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% 인하 적용기간 연장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% →3.5%로 인하하여 적용	□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
적용기간: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	적용기간: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

- ○【기대효과】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
- ○【시행】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부칙(제31383호) 개정

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	□ 탄력세율 추가 인하
○ 킬로그램당 275원 → 193원	○ 킬로그램당 275원 → <u>176.4원</u>
※ 적용기간: 2022년 7월 31일까지	※ 적용기간: 2022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 분

- ○【기대효과】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
- ○【시행】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

图 휘발유,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탄력세율 적용	□ 탄력세율 추가 인하
○ (휘발유 등) 리터당 529원 → 370원	○ (휘발유 등) 리터당 529원 → <u>332.5원</u>
○ (경유 등) 리터당 375원 → 263원	○ (경유 등) 리터당 375원 → <u>238원</u>
※ 적용기간: 2022년 7월 31일까지	※ 적용기간: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

- ○【기대효과】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
- ○【시행】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법 시행령」 개정

9 RCEP 등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집행기준 마련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 신 설 >	□ 연결 원산지증명* 제도 집행기준 마련
	* 역내국으로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• 적용대상 협정: RCEP, 한-아세안 FTA • 작성·발급 유의사항* * 협정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법,
	서류보관·제출 및 원산지검증 수인 의무 등
	•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
	*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
	신고서(사본으로 대체 가능), 거래사실 입증서류, 수출입
	물품간 동일성 확인서류 등

- ○【기대효과】체약국간 무역거래 활성화 및 역내 물류기지 활용 지원
- 【시행일】 '22. 5. 18. 이후 연결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신청 분부터 적용 * 「연결 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업무 집행 지침」제정

10 RCEP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서식 개정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원산지소명서 서식	□ 원산지소명서 서식 <u>정비</u>
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	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 <u>정비</u>
완전생산물품, 세번변경기준, 부가가치기준 등	- < 좌 동 >
- < 추 가 >	-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
• < 신 설 >	● <u>RCEP 원산지 국가 확인란</u> * * 수출대상국, RCEP 원산지 국가 등 5개 항목
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서식	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서식 <u>정비</u>
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	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 <u>정비</u>
완전생산물품, 세번변경기준, 부가가치기준 등	- < 좌 동 >
- < 추 가 >	-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
• < 신 설 >	• <u>RCEP 원산지 국가 확인란</u> * * 공급물품 연번 등 3개 항목

- ○【기대효과】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서식에 'RCEP 원산지 국가 확인'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RCEP 활용 편의 제고
- ○【시행일】'22. 7. 5.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

Ⅲ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 품목 수 제한 폐지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	□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<u>개정</u>
수출자・수입자・생산자 정보, 운송방법, 원산지 신고・증명 등	• < 좌 동 >
• 원산지결정기준 등 물품명세	- < 좌 동 >
- 물품의 연번(6란): <u>최대 20개</u>	- 물품의 연번(6란): <u>원산지증명서에</u> <u>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(20개) 폐지</u>

- ○【기대효과】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을 폐지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확대
- ○【시행일】'22. 6. 12. 이후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분부터 적용
 - * 「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개정

12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<u>운영</u>	□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* <u>RCEP 확대</u>
	* 국내 제조·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(관세청장 고시로 지정)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
• 간이확인 적용 협정	• 간이확인 적용 협정 <u>확대</u>
- 아세안, 베트남, 중국 및 인도	- < 좌 동 >
- < 추 가 >	-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: 255개 품목

- ○【기대효과】RCEP 활용 수출・제조 기업의 원산지 증빙절차* 간소화
 * (제출서류)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7종 이상 → 국내제조확인서
- ○【시행일】'22. 5. 10.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,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 - *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

13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	□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
	권고서식 제정
• 협정 부속서 3-나(최소 정보 요건) 정보*가 포함된 자율서식	• < 좌 동 >
* 수출자 이름 및 주소 등 12개	
• < 추 가 >	• <u>권고서식</u>
	 - 협정 부속서 3-나 정보 포함하여 총 14란으로 구성

- ○【기대효과】표준화된 서식 활용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작성 편의를 제고하고, 협정 상대국에서 안정적 특혜 적용 지원
- ○【시행일】'22. 5. 18. 이후 RCEP 원산지신고서 작성 분부터 적용
 - *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

14 국민안전과 밀접한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재지정

(공정무역심사팀, 042-481-788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(5개) 운영	□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(3개) 운영
• 에이치형강, 플랜지, 맨홀뚜껑, 자동차 휠, 연석	● 에이치형강, 플랜지, 맨홀뚜껑
※ 지정기간: ~ 2022.7.31	※ 지정기간: 2022.8.1~ 2024.7.31

- ○【기대효과】원산지 둔갑 등 국내 유통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국민안전 밀접 품목의 유통이력관리 대상 재지정으로 사회 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
- ○【시행일】′22. 8. 1.
 - * 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